

『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국유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개정(2014.9.19)으로 구미시민 다자녀가정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산림휴양기회 확대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으로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이 폐지(2015.8.24.)되어 상위법령에 미규정된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 누구나가 입장하여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-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옥성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사용료 구미시민 다자녀가정, 장애인(1~3급), 국가보훈대상자 비수기 50% 감면 (안 별표 1, 별표 1의2)
- 입장제한 삭제(안 제9조)
- 행위제한 삭제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제2항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○ 기 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민 다자녀가정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, 상위법령에 미규정된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며, 상위법 개정예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별표 1의2의 규정을 개정하여, 구미시민 다자녀가정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설사용료를 50%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입장 제한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「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입장 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정비하고, 국유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개정에 맞추어,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감면 대상자인 구미시민 다자녀가정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0%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